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3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158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4의2. 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이행 및 지역 사회 고지에 필요한 조치

제1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담당자

제22조제1항제2호의5, 제2호의6 및 제2호의7을 각각 제2호의6, 제2호의8 및 제2호의9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5 및 제2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접수 및 적합 여부 통보 등”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접수, 적합 여부의 통보 및 현장조사의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제6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2의5.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요청의 접수

2의7.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필요성의 인정

3의3.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공

제22조제2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법 제34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별표 2 제2호자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의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